#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59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김종양ㆍ서일준ㆍ김성원

이종욱 • 조승환 • 김태호

고동진 · 최수진 · 정연욱

김미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·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 ·경제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직능인의 실질적 인 경제활동 및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

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능 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연합회의 업무 수행 및 제6조에 따른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	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	는 직능인들의 경제활동 지원
	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
	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
	<u>런하여야 한다.</u>
<u> &lt;신 설&gt;</u>	제6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	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
	체는 제5조에 따른 연합회의
	업무 수행 및 제6조에 따른 직
	<u>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</u>
	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
	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
	원할 수 있다.